

'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영등포區政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區政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행정운영의 적정 및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審議를 위한 정보를 획득하여 '94년도 예산(안)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

1993. 11. 29. (월) ~ 12. 1. (수)까지 (3일간)

3. 감사대상 기관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각호 해당기관
 - 시민국(사회복지과, 가정복지과, 위생과, 산업과, 환경과, 청소과)
 - 보건소(보건행정과, 보건지도과, 의약과)
 - 동사무소

4. 감사위원 편성

위 원 장	간 사	위 원	사무보조직원
김 형 수	김 형 기	김진국, 서홍선, 우일현 윤태봉, 조연제, 최락희 최수영, 최준화	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(1명) 속기사 (1명)

5. 감사일정 및 장소

일 자	감사 대상 기관	장 소	감사 방법	비 고
'93. 11. 29. ~ '93. 12. 1. (월 ~ 수) 10 : 00~	<시 민 국>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, 산업과 환경과, 청소과	영등포구청 문화공보실	현황 보고 자료 확인 질 의 답 변	
	<보 건 소> 보건 행정과 보건 지도과 의 약 과			
	동 사 무 소	각동사무소는 현지확인 감사		

6. 주요감사사항

대상기관	주요감사사항
사회복지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호, 복지, 노동조합설립,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2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가정복지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가정복지 종합계획 및 노인, 여성복지, 유아교육 사항 2. 청소년 종합시책 수립 및 조정 사항 3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위생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식품 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사항 2.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 허가 사항 3. 위생업소 위반사항 및 감시단속 업무 추진계획수립 사항 4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산업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장의 지도 및 공장등록과 실태조사 사항 2.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사항 3. 연료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. 가스안전 관리업무 및 가스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5. 농업 증산 및 장려계획 사항 6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환경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부과징수 사항 2.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3. 자동차, 생활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 사항 4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청소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체납 관리 사항 2. 진개 수거지역 책정 및 종합계획 수립 사항 3. 청소차량, 운전원 및 장비관리, 정화조의 유지관리 사항 4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보건행정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보건 기획,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2.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보건지도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보건에 관한 사항 2.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3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의약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료법, 의료기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. 약사법 등의 시행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에 관한 사항 3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

4 (第21回-市民保社委員會第1次)

7.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

- 감사대상기관에서는 다음자료를 감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 - 가. 1993년도 업무계획에 따른 각종 주요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
 - 나. 1993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
 - 다. 1993년도 3,000만원이상 공사의 추진실적
 - 라. 1993년도 외부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
 - 마. 1993년도 각종 민원(진정, 청원, 기타) 처리 상황
 - 바.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
- ※ 모든 자료는 15부씩 제출을 요함

8. 감사요령

가. 감사자료제출요구

-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감사위원은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여 요구하는 자료목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한다.

나. 증인 등의 출석요구

- (1)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한다.
- (2) 기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범위로 한다.

다. 감사진행순서

- (1) 감사개시 선언(위원장) —의사봉 3타—
- (2) 위원장의 인사
- (3) 업무현황보고 및 청취
 - 집행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
 - 현황설명
- (4) 질의 및 답변
- (5) 위원장의 감사종료 인사
- (6) 감사종료 선언 —의사봉 3타—

9. 감사결과보고서 작성

- (1) 각위원은 감사일일보고서를 익일 09:00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서식#1)
- (2) 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위원회별로 본회의에 회부한다.
- (3) 보고서는 감사의 목적, 기관, 실시대상기관,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,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,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한다.